

회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
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
결정(변경)도

- 기 정 -

범례

- | | | | |
|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지구단위계획구역 | | 공공공지 |
| | 특별계획구역 | | 쌍지형 공지 |
| | 지적선 | | 공공보행통로 |
| | 획지선 | | 보행자전용도로 |
| | 필지분할가능선 | | 보행자우선도로 |
| | 공동개발(지정) | | 차량출입금지구간 |
| | 공동개발(권장) | | 최고고도지구
(5층, 20m 이하) |
| | 건축한계선 | | 특화가로 |
| | 도로 기부채납 | | 가구번호 |

- * 기존 필지규모가 최대개발 규모를 초과하거나 또는 기 공동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특별계획구역인 경우 또는 공동개발로 지정 및 권장된 경우 최대개발규모 적용에서 제외함
- * 회현동1가 82-40번지는 대지면적 90㎡ 이하로 공동개발 지정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주변 단위대지와 공동개발 권장으로 계획함
- * 회현 특별계획구역, 대지면적 300㎡ 미만의 최고고도지구 저층필지, 특화가로 연결필지는 계획치점 준수 시 5%의 간폐율 완화가 가능함
- *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단위대지가 선택적 공동개발, 공동개발 권장의 미이행, 공동개발 지정의 해제, 필지의 분할 등에 따라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단위대지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, 관계법 제84조에 따라 용적률을 재산정해야 함
- * RC4, RC6, RC7 지역내 건축된 건축물이 최고고도지구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, RC3의 용적률 및 높이 계획내용을 적용해야 함
- * 쌍지형공지가 위치지정 된 단위대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시 유형 V를 적용해야 함

